

#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 제정) 2011.07.27 조례 제2178호

(일부개정) 2014.07.25 조례 제2326호

(일부개정) 2014.11.03 조례 제2331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11.30 조례 제24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 · 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군에 전입하는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6호, 2015.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이란 농어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귀농인"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독립세대가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6호>
5. "귀촌인"이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홍천군으로 이주하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농업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귀농인과 구별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6호>

**제3조(귀농인 신고)**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소정의 양식에 귀농인 신고서를 읍 · 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귀농인 신고대상은 군에 전입한 세대이며, 세대주가 신고인이 된다. <개정 2015.11.30>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14.7.25 조례 제2326호>

- 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문에 조언하게 하고 심의하기 위한 홍천군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개정 2015.11.30>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6호, 2015.11.3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6호, 2015.11.30>

1. 당연직 위원

가. 부군수

나. 농촌사회과장

다. 농업정책과장<개정 2014.11.3.>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1명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의 장 2명 이내

다. 귀농귀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라. 그 밖에 귀농귀촌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명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6호, 2015.11.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업무담당이 된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6호>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정책에 관한 사항

2. 귀농인 지원 대상 및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

3. 귀농홍보, 귀농인 조기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5.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25 조례 제2326호>

6. 그 밖에 귀농귀촌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4.7.25 조례 제2326호>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

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홍천군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3.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4.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5.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원
6. 그 밖에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의2(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및 기능) <신설 2014.7.25 조례 제2326호>**

① 군수는 귀농귀촌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사무국장 1명, 코디네이터 2명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귀농귀촌지원센터 기능은 각호와 같다.

1.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2.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보 구축
3. 귀농·귀촌인에 대한 상담·자문·컨설팅·홍보 등 종합지원
4. 기타 귀농·귀촌인 지원을 위한 업무

### **제11조의3(귀농귀촌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신설 2014. 7.25 조례 제2326호>**

- ① 군수는 지원센터에서 선정한 정책과 사업을 기초로 지원센터의 상근실무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위탁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가 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목적에 따라 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훈련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귀농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귀농인의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마을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인을 우수귀농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지역농업인과 귀농인이 화합하여 마을발전에 뛰어난 공이 있을 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의2(귀농귀촌인의 날 운영) <신설 2014.7.25 조례 제2326호>**

- ① 군수는 농업·농촌을 알리고, 귀농귀촌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귀농귀촌의 날을 정하여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의3(후견인 지원) <신설 2014.7.25 조례 제2326호>**

- ① 군수는 홍천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농촌지역 적응을 위해 덕망 있는 주민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지원하고, 그 밖의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 **제1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4.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5.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

는 경우. 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 보전 부업형 취업인 경우,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인 경우, 격일·격주 교대 근무인 경우, 선거 또는 위촉에 따라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인 경우는 군수가 판단하여 제외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취소를 할 때에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 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78호, 201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6호, 2014.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31호, 2014.11.3.>(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33>까지 생략

<34>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 다목 중 “농정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19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